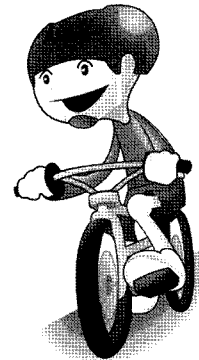


# 자전거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.

## 차체 내구성 안전요건 추가 및 석면함유 패드 사용 금지

### 개요

-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물놀이기구, 스포츠용 구명복, 선글라스, 썬캡 등 여름철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,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,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효과가 95%이하인 제품이 6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자외선 차단율 등의 안전·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다수 있다고 밝힘

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안전요건을 독일, 영국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EN 규격의 피로시험을 도입하여 자전거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7월10일 입안예고함

- 대부분의 자전거 차체파손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안전기준의 경우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되어 있고 내구성에 대한 기준치가 미흡하여 안전확보에 한계가 있음

- 이러한 안전요건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35개 자전거에 대해 피로시험을 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음

- 종전 기준에 의해 시험을 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로시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의 결함이 발생

## 조치 사항

- 기술표준원은 이번 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에서는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
  - 이러한 조치는 기술표준원이 지난 5월하순부터 6월초순에 자전거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9대에서 백석면이 2%씩 검출되는 등 안전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
  - 석면은 주로 10만원~30만원대의 중저가 수입제품 중 밴드 브레이크를 사용한 제품에서 검출됨
- 이 외에 종전의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폐지하고 일반자전거에 흡수함으로써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산악용으로 잘못 사용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
  - 산악용자전거는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“산악용”으로 표시토록 함

## 향후 추진계획

- 한편, 브레이크 레버위치가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뒤 브레이크용은 핸들바의 왼쪽, 앞 브레이크용은 핸들바의 오른쪽에 배치토록 해 왔으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임
  - 한국,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일반용자전거 및 산악용자전거의 뒤 브레이크 레버를 핸들바의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어 어느 쪽에 배치하는 것이 안전확보에 더 유용한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함
- 기술표준원은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을 WTO/TBT에 통보하여 회원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할 예정이며, 석면이 검출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를 할 계획임

